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2조제2항제2호)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
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
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
하는 사람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
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

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제1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2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있고,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
이상 둔 가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) 단,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
후 최초로 신청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사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2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	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
관계법령

□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

제24조(이용료 및 수련비용) ①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·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.

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
나. 일자리 · 문화 · 교육 · 복지 · 주택 ·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

다.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2. 일 · 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3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4. 노인의 여가 · 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액의 정확한 추산이 어려움.

4. 작성자

교육진흥과 지방행정서기 채 주 호 (☎ 480-2723)

소 관 부 서		교육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윤 태 호
	담 당	정 경 애
	담 당 자	채 주 호 (480-2723)